일감법학 | 제48호
2021년 2월 699-719쪽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Ilkam Law Review
Vol.48, Feb., 2021. pp.699-719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

윤동주의 국적 논쟁에 대한 소고*

-독립투사들의 국적문제를 겸하여 논함-

A Brief Analysis of Yoon Dongju's Nationality

-And on the Nationality of the Anti-Japanese Martyrs-

엄 해 옥**
YAN HAIYU

목 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윤동주의 국적 논쟁
Ⅲ. 윤동주의 이중국적 인정
Ⅳ. 독립투사들의 국적 인정
Ⅴ. 나가는 말

윤동주와 윤동주의 시는 지난 세기 40년대부터 한국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한국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애국시인으로 인정되어 왔고 지난 세기 80년대부터 중국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중국조선족 애국시인"으로 인정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윤동주는 "재외동포재단의 역사 속 다양한 인물을 재외동포로 재조명할 필요"로 인해 한국국민에서 제외되어 중국국적을 가진 재외동포로 인정되면서 논쟁이 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法統)을 계승한 한국에서는 외국국적을 가진 우수인재들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해 주고 있는 반면 윤동주와 이국땅에 묻혀있는 일부 독립투사들의 한국국적을 취소하고 있다. 윤동주의 국적문제는 윤동주 한 사람의 국적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시대에 민족의 해방과 조국의 광복을 위해 싸우다가 희생되어 이국땅에 묻혀 있는 일부 독립투사들의 국적문제 그리고 고인이 된 그들의 희생과 공헌과도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다.

https://doi.org/10.35148/ilsilr.2021..48.699
투고일: 2020. 12. 8. / 심사의뢰일: 2021. 2. 4. / 게재확정일: 2021. 2. 15.
* 중국 길림성 사회과학 중점영역 연구기지 연구 성과.
** 중국 연변대학법학원 부교수. 중국 길림성 사회과학 중점영역 연구기지 조선·한국법 연구센터 연구원
Associate Professor, Law School of Yanbian University

윤동주와 일부 독립투사들을 한국국민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그들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불 존중으로 될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독립운동사에 관한 국사편찬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다. 반대로 단일국적을 선호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저항시인 윤동주 그리고 중국 땅에서 독립운동에 참가하고 희생을 치른 많은 독립투사들에게도 중국국적을 부여해 주고 있다. 윤동주와 일부 독립투사들에 대한 이중국적인정여부는 그들이 치른 희생과 정신에 대한 존중뿐 아니라 나아가서 한반도의 역사에 대한 존중이 아니냐 하는 견해이다.

[주제어] 윤동주, 애국시인, 독립투사, 재외동포, 이중국적

Ⅰ. 들어가는 말

일제식민지시대에 중국 길림성 용정시에서 태어난 윤동주(尹東柱)는 한국에서 존경을 받아 온 저항시인이자 건국훈장을 받은 애국시인이었다. 그러나 현재 한국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오던 윤동주는 일제식민지시대 독립운동에 참가하고 희생을 치른 일부 독립투사들과 함께 한국국민에서 배제되고 재외동포로 인정되면서 윤동주의 국적문제는 논쟁이 되고 있다.

윤동주는 한민족(韓民族)이 나라를 잃고 민족의 자유 그리고 언어와 문자사용이 금지되었던 식민지시대 민족에 대한 사랑과 민족독립의 소망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 담아 노래한 저항시인이었으며 광복전야 일본 후쿠오카(福岡) 감옥에서 옥사한 한민족의 시인이다. 지난세기 40년대부터 윤동주의 시가 한국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윤동주는 애국시인으로 한국국민들의 존경을 받아왔고 지난 세기 80년대부터 중국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중국조선족애국시인”으로 존경을 받아왔다. 하지만 현재에 이르러 윤동주는 “재외동포재단의 역사 속 다양한 인물을 재외동포로 재조명할 필요”로 인해 한국국민에서 제외되어 중국국적을 가진 재외동포로 인정되고 있다.

국적법은 국민의 신분을 인정하는 헌법적 법률로서 국가와 자연인의 법률 계약으로 되면서 내국 국적을 가진 자연인은 내국인으로, 외국 국적을 가진 자연인은 외국인으로 인정된다. 아울러 국적은 한 사람이 어느 한 국가에 속하는 국민 또는 공민의 법률자격을 나타내며 또한 한 국가가 자국민에 대해 외교보호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이기도하다. 국적의 평등원칙에는 국가주권원칙, 즉 어떤 사람에게 국적을 부여하는가 하는 부여권뿐 아니라 국민에 대해 평등한 대우를 해주어야 하는 원칙도 포함된다. 국적충돌은 주로

두 가지 상황에서 표현된다. 하나는 한 자연인이 2개 또는 3개 이상의 국적을 가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 자연인이 그 어떤 나라의 국적도 가지지 않는 것이다. 전자는 국적의 적극적인 충돌이라 하고 후자는 국적의 소극적인 충돌이라 한다.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점은 윤동주의 국적문제이다. 가령 중국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역사속의 다양한 인물들을 재조명"하면서 윤동주를 중국국적에서 배제시킨다고 가설하는 경우, 저항시인 윤동주의 국적은 적극적인 충돌에서 소극적인 충돌로 전이되면서 윤동주는 무국적자로 되는 수밖에 없다. 최재형을 비롯한 일부 독립투사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다투어보자면 윤동주의 국적문제는 윤동주 한 사람의 국적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윤동주와 함께 식민지시대 조국의 광복과 민족의 해방을 위해 싸우다가 고인이 되어 이국 땅에 묻혀 있는 일부 독립투사들의 국적문제와도 연관을 갖고있을 뿐 아니라 그들의 희생과 공헌 그리고 한반도의 독립투쟁사와도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다.

Ⅱ. 윤동주의 국적 논쟁

1. 한국의 애국시인 윤동주

1917년 12월 30일 중국 길림성 용정시 명동촌에서 아버지 윤영석(尹永錫)과 어머니 김용(金蓉)[1]의 장남으로 태어난 윤동주는 일제식민지시대 28년이란 짧은 춘추로 일본감옥에서 생을 마친 젊은 시인이다. 오늘날까지 윤동주와 윤동주의 시에 관한 기념행사들이 한국은 물론 중국과 일본 등 여러 나라들에서 진행되어왔다.

우선, 일제식민지시대의 저항시인이다.

한반도 그리고 나서 자란 고향이 일본에 강점당하고 일본의 식민지통치를 받던 시기 한민족의 언어와 문자로 시를 남긴 윤동주는 지난 세기 중기부터 한국에서 저항시인 그리고 애국시인으로 인정받으면서 윤동주와 윤동주의 시는 한국국민들의 사랑과 존경 나아가서 한국정부의 인정을 받아왔다.

윤동주는 1931년 명동(明東)소학교를 졸업하고, 1932년 은진(恩眞)중학교에 입학하였다. 1935년 평양 숭실(崇實)중학교로 전학하였다가 다시 용정으로 돌아왔다. 1937년부터

1) 윤동주 생가에서 해설원으로 일했던 송길련의 증언.

일제는 '창씨개명'(創氏改名)을 강요했다. 보통 3자로 되어 있는 전통적인 한국인의 이름을 보통 4자인 일본식으로 개명토록 했다. 만일 일본식 창씨개명을 하지 않으면 취학, 취업, 우편물 이용 등을 규제하기도 했다. 윤동주가 연희대학에 입학하던 1938년 대학교 1학년 때는 조선어 사용금지령이 있었다.[2] 윤동주는 육필원고묶음을 세부 만들었다. 한 부는 지도교수였던 이양하 선생에게 드리고, 다른 한 부는 정병욱에게, 그리고 남은 한 부는 윤동주 자신이 가지고 1942년 2월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다.[3] 정병욱도 1944년 1월에 학병으로 끌려간다. 징집되기 직전에 어머니에게 원고를 넘기며 보관해 달라고 신신당부하였고 정병욱의 어머니는 원고를 항아리에 담아 마룻바닥 아래 묻어 둔다.[4]

윤동주는 1942년 일본릿쿄[立教]대학에 입학한 후 도시샤대학(同志社大學)으로 옮겼다. 1943년 7월 여름방학을 맞아 집에 다녀오려고 차표까지 사서 짐까지 부쳐놓고 떠나오려던 때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1945년 2월 16일 원인 불명의 사인으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생을 마감했다. 1945년 3월 6일, 윤동주의 유해는 길림성 용정 동산의 중앙장로교회 묘지에 안장되었고 그 해 6월 그의 무덤 앞에 "시인 윤동주 지묘"라는 비석이 세워졌다.[5] 광복 후 윤동주의 동생들이 한반도로 돌아가고 1948년에 윤동주의 모친이, 1965년 부친이 사망하게 되자 윤동주의 묘소를 돌보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윤동주는 1934년 용정은진중학에서 공부하던 시절부터 시를 쓰기 시작하여 일생동안 모두 119수의 시와 4편의 산문을 썼다.[6] 1948년 1월 30일에 정음사에서 발간한 윤동주의 첫 유고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는 31편이 실렸으나 1955년에는 그 수가 93편으로, 1976년에는 116편으로 증가되었고 1999년에 윤동주 자필시고 전집(사진판)"이 나왔다. 대부분은 윤동주의 여동생 윤혜원 부부가 윤동주의 시들을 서울로 지참해 온 덕택이었다.[7]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는 해방 후에 가장 널리 애송된 윤동주의 유고시집일 뿐만 아니라 문학사적으로도 일제 말기의 어둠을 밝혀준 한 줄기 빛으로 은유되고 있는 작품집이다.[8] 윤동주의 대표작은 "서시"로서 윤동주의 생가와 윤동주의 모교 연세대학교

2) 김응교, "우애와 기억의 공간, 윤동주와 정병욱", 한민족문화학회, 2015년(2), 23쪽.
3) 김응교, 앞의 논문, 24쪽.
4) 김응교, 앞의 논문, 20,21쪽.
5) NAVER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73499&cid=59011&categoryId=59011(2020.3.2)
6) 참조: 尹东柱著, 里咏译, 仰望天空毫无愧恨, 北京出版社, 延边人民出版社。2012年, 15頁.
7) 참조: 연변라지오TV방송국: http://www.iybtv.com/p/17310.html(2020.3.26)
8) 유성호, "민족 저항시인으로서의 윤동주, 나라사랑",나라사랑 128집, 외솔회, 2019, 130쪽.

교정에 새겨져 있다.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 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 운다.

지난세기 40년대부터 저항시인 윤동주와 그의 시는 한국에 널리 알려졌다. 그 뒤로 일본 그리고 중국에 알려지면서 윤동주는 한국국민과 여러 나라 재외동포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아왔다. 아울러 윤동주를 기념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과 행사들이 한국, 중국,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었다.

다음, 윤동주의 기념행사이다.

1949년 한국에서 윤동주 첫 기념행사가 있었고[9] 1968년 11월에 「서시」가 새겨진 「윤동주 시비」가 윤동주의 모교인 연세대학교 교정에 세워졌다. 1990년 8월 15일 한국정부는 윤동주에게 대한민국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하였다.[10] 이어 중국, 일본 등 나라들에서도 윤동주를 기념하는 행사가 증가되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는 사회주의진영과 자본주의진영으로 나뉘면서 동서냉정이 시작되었다. 당시, 중국과 한국은 국교가 없었고 소통이 전혀 되지 못했던 탓으로 중국조선족사회는 윤동주가 한국에서 애국시인으로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윤동주라는 이름은 1985년 5월 일본학자 오오무라마스오(大村益男)교수에

9) 참조: 이광인, “시인 윤동주 인생 려정 연구”, 民族出版社, 2015年, 213쪽.

10) 참조: NAVER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73499&cid=59011&categoryId=59011(2020.3.26)

의해 처음으로 조선족사회에 알려졌고 중국조선족 간행물인「문학과 예술」에 의해 전해지기 시작했다.[11]

1992년, 윤동주가 다녔던 중국 길림성 용정시 대성중학교 옛터 앞에 윤동주시비가 세워졌고[12] 1994년 8월 용정시 지신향정부에서는 역사적 유물로서 윤동주생가를 복원하였다.[13] 2010년 길림성 연길시공원에 윤동주의 동시비에 윤동주의 동시「참새」가 새겨졌고[14] 2011년「제2회 윤동주 문화제」가 윤동주 모교인 용정중학교에서 개최 되었다.[15]

2012년 5월 29일「윤동주연구회」성립식이 윤동주의 고향 용정시 지신진 명동촌에서 있었고[16] 2014년 9월 27일 사단법인「용정 윤동주 연구회」가 설립되었다.[17] 2015년 4월 4일 용정에「윤동주 연구회 연구소」설립식이 있었고[18] 2018년 4월 14일 심양 소가툰에서「동주학당과 한중문화융합연구소」설립식이 있었다.[19]

2005년 2월 12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시인 윤동주 서거 60주기 추모 문학 쎄미나가 있었고 13일 시인 윤동주 서거 60주기 추모식이 있었으며[20] 2017년 일본인으로 구성된 시인 윤동주를 기념하는 릿쿄 모임에서 윤동주 시인의 존재를 알리는 시 낭송회 등의 이벤트가 있었다.[21] 그 외, 일본에서 윤동주의 시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고 NHK 특집으로 방영되었다.[22]

2005년 2월 16일 저녁 7시, 오스트랄리아의 동포문인들은 시드니 한인회관에서「윤동주 시인 서거 60주기 추모 문학제」를 열어 윤동주의 시 낭송과 그의 문학생애를 회고하는 강연이 있었고[23] 2017년 미국 보스턴의 한미예술협회는 렉싱턴 아트 앤 크래프트 소사이어티에서「윤동주시인 탄생 100주년 기념 미술전시회」를 가졌다.[24]

---

11) 참조: 이광인, 시인 윤동주 인생 려정 연구, 民族出版社, 2015年, 116쪽.
12) 참조: 김혁, 윤동주, 연변인민출판사 2019년, 156쪽.
13) 참조: 이광인, 앞의 논문, 10쪽.
14) 참조: 김혁, 앞의 논문 156쪽.
15) 참조: 연변라지오TV방송국: http://www.iybtv.com/p/13431.html(2020.3.26)
16) 참조: http://www.iybtv.com/yanbianzuqiu/p/25703.html(2020.3.26)
17) 참조: 김혁, 앞의 논문, 157쪽.
18) 연변라지오TV방송국: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69621/15499180.html(2020.3.20)
19) 참조: 연변라지오TV방송국: http://www.iybtv.com/p/156016.html(2020.3.20)
20) 참조: 이광인, 앞의 논문, 215쪽.
21) 참조: MOYIZA: https://news.moyiza.kr/view.php?from=main_1_news_tab6&news_srl=620265(2020.3.20)
22) 김응교, 앞의 논문, 29쪽.
23) 참조: 이광인, 앞의 논문, 211쪽.

위에서 보여지는 바 지난세기 중기부터 윤동주는 한국에서 애국시인으로 인정 되어 왔고 본 세기에 이르러 중국에서 조선족 애국시인으로 인정되어 왔으나 그 동안 고인 윤동주의 이중국적 문제로 인해 일부 견해와 평론들이 있었지만 적극적인 국적충돌로 인한 분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오늘에 와서 윤동주는 한국국민에서 배제되어 외국국적을 가진 재외동포로 인정되고 있다.

2. 한국의 "재외동포" 윤동주

2019년 초등학교 6학년용 한국국정교과서에는 저항시인 윤동주가 재외동포로 기술되어 있다. 교과서에는 윤동주가 "독립을 향한 열망과 자신에 대한 반성을 많은 작품에 남기고 떠난 재외동포 시인"으로 소개되고 일부 독립투사들도 재외동포로 인정되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우선, 윤동주의 국적 논쟁

2018년부터 국정교과서는 윤동주와 최재형을 비롯한 일부 독립투사들을 한국 국민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본 작업은 한국 교육부가 윤동주와 최재형 등 일부 인사들을 재외동포로 기술해달라는 재외동포재단의 요청을 받아 5개 국정교과서 편찬 기관에 재외동포재단의 입장을담은 자료를 전달했고 교과서 집필진이 이를 검토한 뒤 이뤄졌다.

교포문제연구소 이구홍 소장은 "이주사적 시각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최초의 공식 이민은 1900년대 초반 여권을 소지하고 나간 하와이 이민"이라며 "당시 북간도는 우리 영토로 여겨졌는데 윤동주 일가가 이 지역으로 이주했다고 해서 윤동주를 '외국으로 나간' 재외동포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법률상으로 재외동포라는 개념이 있지만 사실 재외동포를 어디까지 포함할 수 있는가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며 "한국인이 모두 존경하는 윤동주를 굳이 '재외동포'라고 별도로 규정할 이유가 있냐"고 반문했다.

윤동주의 국적에 대해 재외동포재단의 관계자는 "재외동포재단이 역사 속 다양한 인물을 재외동포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2017년 12월 국무총리 주재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제안했고 이후 준비 과정을 거쳤다"며 재단이 충분한 연구 없이 윤동주를 재외동포로 포장했다는 비판에 대해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윤동주를 단순히 시인으로 볼 것인지, 조국 독립에 관해 토론하고 조선의 미래를 고민한 저항시인, 더 나아가 독립운

24) 참조: MOYIZA: https://news.moyiza.kr/view.php?from=main_1_news_tab6&news_srl=620265(2020.3.20)

동가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계마다 시각이 다르다"며 "시인, 독립운동가, 더 나아가 재외동포로서의 윤동주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윤동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번 논란을 충분히 반영해 향후 교과서 집필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도덕 교과서에 윤동주가 "재외동포"로 실린 것은 도덕과 국정교과서 편찬위원회가 전문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한 사안"이라며 "여러 곳에서 논란이 제기됐고 수정 필요성이 나온 만큼 다시 충분히 논의하지 않을까 생각 한다"고 설명했다[25]

윤동주의 이중국적 문제를 두고 한국에는 일부 견해와 평론들이 있다. 예를 들면 서울 시인협회는 중국이 지난 2012년 8월 길림성 용정시 명동촌에 있는 윤동주 생가를 복원하면서 "중국 조선족 애국시인 윤동주"라는 초대형 안내석을 세우고 선전하는 것은 엄연한 문화 침탈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의 사랑을 받는 민족시인 윤동주의 국적을 조작하려는 비문화적 행태를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했다.[26] 그 외, 오늘에 이르러 몇 년 전부터 윤동주를 "중국 조선족 애국시인"이라고 하는 중국의 억지와 궤변은 참으로 개탄스럽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재외동포 시인 윤동주"로 규정하는 것도 아직은 낯설고 불편하다[27] 는 평론도 있다.

"재외동포법"에서는 재외동포를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논리에 따르면 윤동주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동포의 외연에 포섭될 수 있고, 아울러 이미 중국에서는 조선족 시인으로 인정되어 있다는 점, 특히 윤동주는 애국시인 재외동포가 아니라 단지 재외동포로 인정되었다는 점이다. 러시아 국적을 보유한 최재형과 동일하게 재외동포로 인정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윤동주는 외국국적을 가진 재외동포로 인정받고 있다는 견해이다.

현재, 한국국적법은 우수인재들에게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부여해 주고 있으나 윤동주와 이국땅에서 희생된 독립투사들의 한국국적은 취소되고 한국국민에서 배제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국민에서 배제된 윤동주와 일부 독립투사들이 어느 날 무국적자로 전락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에서 저항시인 윤동주와 일부 독립투사들의 적극적인 국적충돌

25)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801108100371(2020.3.23)

26) YTN: https://www.ytn.co.kr/_ln/0103_201604201810406980(2020.3.23)

27)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538038(2020.3.23)

을 묵인해 주는 것도 고인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존중이 아니냐하는 견해이다.

Ⅲ. 윤동주의 이중국적 인정

1. 윤동주의 한국국적 인정

어제까지 윤동주는 한국국민들의 존경을 받았고 한국정부로부터 건국훈장을 받은 한국의 애국시인이었으나 오늘에 와서는 재외동포시인으로 인정되어 한국국민에서 배제되고 한국국민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남・북한국적법의 시각에서 윤동주의 국적에 대해 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아진다.

우선, 북한국적법에서 본 윤동주의 국적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결속된 후 한반도가 분단되면서 1948년 8월 15일 한반도의 남반부에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고 9월 9일 한반도의 북반부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가 성립되었다. 같은 해 "대한민국국적법('한국국적법'으로 약칭)"이 제정되었고 1963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적법('북한국적법'으로 약칭)"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오늘까지 남북한은 다 같이 한반도는 하나의 통일된 민족국가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 국적법에서 윤동주의 국적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북한국적법"은 1995년에 제1차 개정이 있었고 1999년에 제2차 개정이 있었다. 북한의 현행 국적법 제2조에서 제정한 북한공민자격은 "공화국창건 이전에 조선의 국적을 소유하였던 조선 사람과 그의 자녀로써 그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자이다."이는 최초국민요건에 관한 규정으로써 이중국적 원칙으로 볼 수 있다. 따지고 보면 제2차 세계대전까지 한반도에는 성문국적법이 없었던 탓으로 "조선국적"이라함은 추상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고 "국적포기"도 마찬가지로 추상적인 행위라 할 수 있다. 추상적인 개념에서 윤동주의 국적을 보자면 고인 윤동주도 다른 조선인들과 마찬가지로 공화국 창건 이전에 조선의 국적을 소유하였던 "조선사람"으로써 "조선국적포기"라는 추상적인 행위를 실행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한반도의 모든 후예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최초공민요건에 부합된다.

다음, 한국국적법에서 본 윤동주의 국적이다.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친 한국국적법은 아직까지 최초국민요건에 관한 구체규정이 없

다. 한국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한국국적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선천적인 국적취득을 전제로 한 혈통주의 기본원칙이다. 1945년 일본이 투항하고 식민지통치가 결속되었으나 한반도로 돌아가지 않고 중국에 남은 윤동주의 부모들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었고 고인 윤동주도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없었으나 혈통주의를 선천적인 국적취득의 원칙으로 한 한국에서는 고인 윤동주를 한국 국민으로, 한국의 애국시인으로 인정하고 존중해 왔다. 하지만 오늘에 이르러 윤동주와 일부 독립투사들을 한국국민에서 배제시키고 외국국적을 가진 재외동포에 귀속시키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한국의 현행 복수국적제도이다. 2011년부터 한국에서는 제한적으로 이중국적제도를 실시하면서 살아있는 우수인재들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해 주고 있다. 동아시아 국적법 사의 이정표라 여겨진다. 유감스러운 것은 현재, 고인 윤동주와 최재형을 비롯한 일부 독립투사들은 복수국적을 부여받는 대신 한국국민에서 배제되고 외국국적을 가진 재외동포로 인정되고 있다. 그들이 한국국민에서 배제되고 있는 법적 근거에 의문이 생길 뿐 아니라 한국 헌법의 평등원칙과 국적법의 기본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든다.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점의 하나는 한국에서 법적 근거가 없이 윤동주를 한국국민에서 배제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날 중국에서도 윤동주를 중국조선족에서 다시 말하자면 중국공민에서 배제시킬 경우, 윤동주는 무국적자로 전락되는 수밖에 없다. 현재, 다행이라 여겨지는 것은 고인 윤동주가 아직까지 중국조선족애국시인으로 즉 중국국적자로 인정받고 있는 점이다.

2. 윤동주의 중국국적 인정

윤동주는 혈통주의를 기본원칙으로, 엄격한 단일국적원칙을 선호하고 있는 중국에서 "중국조선족 애국시인"으로 인정받고 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청말 윤동주의 조부모[28]는 청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였고 새 중국이 건립된 후 윤동주의 부모들은 토지

28) 1909년에 이르러 청정부는 중국역사상 제1부 성문국적법인 "대청국적조례"를 반포했다. 1914년 김약연과 이동춘 등은 만세대의 조선이주민들을 대표하여 북경에 가서 중화민국 국무원에 「만호 청원 귀화입적서」를 제기하였다. 이는 간민회의 친중 배일(親中 排日)의 적시적인 조치였는데 중화민국 국무원의 비준을 받았다. 윤동주의 조부 윤하현(尹夏鉉, 1875-1947)은 제일 먼저 중국 국적에 가입하였다.(참조: 앞의 논문, 124쪽.)

개혁에 참가하여 중국국적을 취득하고 중국조선족공민으로 되었다.

우선, 윤동주 부모들의 국적인정이다.

지난세기 80년대부터 윤동주 그리고 윤동주의 시가 중국에 알려지기 시작하였고 90년대부터 중국조선족 문학계의 인사들로부터 윤동주의 국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본 세기에 이르러 윤동주는 "중국조선족애국시인"으로 인정되었다. 윤동주가 중국조선족애국시인으로 인정되기까지 중국국적법의 기본원칙인 혈통주의가 기본 골격으로 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견해이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무조건 투항을 선포하였다. 중국동북지역으로 이주한 윤동주의 부모들은 한반도로 돌아가지 않고 명동촌에 남아 1946년부터 동북지역에서 진행된 토지개혁에 참가하여 토지를 배분받고 중국국적을 취득하였으나 1945년에 고인이 된 윤동주는 1946년부터 중국동북지역에서 진행된 토지개혁에 참가하지 못했다. 하지만 혈통주의를 국적취득의 기본원칙으로 한 중국국적법의 원칙에 의해 고인 윤동주는 조선족애국시인으로 인정받고 있다.

윤동주의 중국국적에 관하여, 지난세기 90년대부터 중국조선족문학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되었다. 1995년 이상각선생은 「천지」제12호에서 "윤동주 시인은 바로 연변에서 태어났고 연변에서 자랐으며 연변에서 공부한 우리의 시인이다. 그는 중국국적을 가진 중국조선족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고[29] 1995년 정판룡교수는 「민족시인 윤동주 50주기 기념학술연구회」에서 "윤동주 시인은 중국조선족 시인"이라 하였다.[30] 1996년 연변대학 최문식 교수와 김동훈 선생은 「윤동주 유고집」을 출판하면서 서문에 "윤동주는 19세기 30-40년대 중국조선족의 저명한 반일애국청년 시인"이라고 썼다.[31]

2005년은 윤동주 시인 서거 60주기가 되는 해이고 조선족사회에 알려진지 20주년이 되는 해였다. 중국조선족 신문, 간행물인 「흑룡강신문」, 「연변일보」, 「생활안내」에 윤동주가 소개되면서 윤동주는 더는 모호한 민족시인이 아니라 조선족 시인으로 이 세상에 나타났다.[32] 이로써 윤동주 시인에 대한 평가는 예전의 불투명한 민족시인으로부터 조선족 시인으로 고착 되였음을 보여 주면서[33] 2012년에 이르러 윤동주 생가 앞에는 「중국조선족 애국시인 윤동주」라는 거대한 화강암 비석과 중국어로 번역한 시비가

29) 이광인, 앞의 논문, 118쪽.

30) 참조: 앞의 논문, 122쪽.

31) 최문식/김동훈, 윤동주 유고집, 연변대학 출판사,1996년,17쪽.

32) 참조: 이광인, 앞의 논문, 121쪽.

33) 이광인, 앞의 논문, 119쪽.

세워졌다.[34)]

다음, “재외동포법”에서 본 윤동주의 국적인정이다.

1999년 한국법무부에서는 아메리카한인들의 이중국적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약칭: 재외동포법)”을 제정하였다. 재외동포의 한국에의 출입국과 한국 내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재외동포법”의 규정에서 윤동주의 국적문제를 고찰 해 볼 필요가 있다.

“재외동포법” 제2조 재외동포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재외동포”란 첫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둘째,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이다.

본 법 제2조 제1항 규정에서 윤동주의 국적문제를 고찰해 보자면 식민지시기에 중국에서 태어났고 고인이 된 윤동주는 동아시아에 영주권개념이 생기기 전에 일본 후쿠오카 감옥에서 원인불명으로 고인이 되었다. 그리하여 고인 윤동주는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범주에 속할 수 없다. 다른 한 면으로 윤동주의 부모들은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한반도를 떠나 명동촌으로 이주한 것으로서 고인 윤동주는 본 법 제2항의 규정에의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 한 적은 없으나 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동포의 범주에 귀속 될 수 있다.

현재, 저항시인 그리고 애국시인으로 한국국민들의 존경을 받아 온 윤동주는 한국국민에서 배제되어 있고 한반도로부터 중국 그리고 러시아에서 독립운동에 참가하다가 희생되어 이국땅에 묻혀 있는 일부 독립투사들도 한국 국민에서 배제되고 있다. 반대로 윤동주 그리고 독립운동에서 희생된 많은 한인투사들은 현재 중국국적을 가진 항일투사로 인정받고 있다.

34) 참조: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538038(2020.3.23)

Ⅳ. 독립투사들의 국적 인정

1. "재외동포"로 인정된 독립투사들

초등학교 6 학년용 국정교과서에 윤동주 시인이 "재외동포"로 기술된 것을 두고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이를 추진한 재외동포재단이 윤동주 시인 외에도 김좌진, 홍범도 등 독립 운동가들도 교과서에 "재외동포"로 표기하거나 기술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나타났다.[35] 초등학교 6 학년이 사용하는 국어 교과서에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이 "재외동포"로 표현됐다.[36] 이와같이 일부 독립투사들은 현재 한국국민으로부터 한국의 재외동포로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우선, 최재형 독립투사이다.

최재형투사는 1860 년에 함경북도 경원에서 출생하였다. 구한말 연해주 의병과 독립운동의 지도자이며 1919 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을 때 재무총장에 선임되었다.[37] 1880 년대 러시아에 귀화한 뒤 그 지역의 도헌(都憲) 및 자산가로 성장하여 러시아 한인사회를 이끈 대표적인 지도자였다. 1905 년 이후 적극적으로 항일투쟁을 전개하여 1920 년에 시베리아에 출병한 일본군에게 처형될 때까지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38] 1962 년 한국정부는 최재형의 공훈을 기리어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39]

다음, 홍범도 독립투사이다.

홍범도투사는 1868년 평양에서 출생하였다. 1919년 북간도(현 중국연변지역)에서 대한독립군을 창설하였고 1920년 봉오동전투에서 일본군을 크게 무찔렀으며 같은 해 청산리전투에 참가하였다. 1921년 소련 당국의 한국 독립군 무장해제령으로 연해주로 이주한 그는 1937년 스탈린의 한인강제이주정책으로 카자흐스탄으로 이주되어 그곳에서 극장 수위 등으로 일하다 1943년 사망했다.[40] 1962년 한국정부는 홍범도의 공훈을 기리어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41]

---

35)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821130500371(2020.6.6)

36) 연합뉴스: https://www.koreancent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66842(2020.9.9)

37) 이은정, "한국독립운동사 연구", 독립기념과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6.10, 291쪽.

38) 박완, "최재형과 재러 한인사회", 사학연구 1998(9), 한국사학회, 705쪽.

39) 참조: NAVER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753501&cid=59011&categoryId=59011(2020.6.6)

40) 참조: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821130500371(2020.6.6)

41) 참조: NAVER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72039&cid=59011&categoryId=59011(2020.

그 다음, 김좌진 독립투사이다.

김좌진 투사는 1889 년 충청남도 홍성에서 출생하였다. 1920 년 청산리(靑山裏), 백운평(白雲坪), 천수평(泉水坪), 마록구(馬鹿溝) 등지에서 일본군과 격전을 전개하였고 1930 년 1 월 24 일 영안현 산시역(山市驛)부근에서 순국하였다. 1962 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다.[42)]

마지막으로 안 창호 독립투사이다.

안창호 투사는 1878 년 평남 강서군 초리면 봉상도에서 태어났다. 1909 년 안중근 의거와 연관된 혐의로 옥고를 치렀고 1910 년 중국으로 망명했다가 이듬해 미국으로 건너갔다. 1932 년 윤봉길 의거 직후 상해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국내로 압송되어 1935 년 2 월 가출옥 했다. 1937 년 일제가 일으킨 "동우회 사건"으로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 뒤 그해 12 월 병보석으로 풀려나 석달 만에 숨졌다.[43)]

돌이켜 보면 일제식민지시기 외국으로 이주한 많은 독립투사들은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하였다. 그 주요 원인은 일제의 식민지통치와 제재에서 벗어나 잃어버린 조국의 독립과 한민족의 해방을 되찾는 독립운동을 진행하기 위한데 있었다. 유감스러운 것은 오늘에 이르러 해외에서 독립운동에 목숨 바친 독립투사들을 한국국민에서 배제시킨다는 것은 그들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차별로서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도 연관성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견해이다.

1994년 12월 3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法統)을 계승"한 한국에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4856호)"이 제정되어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독립유공자후손들에게 한국국적을 부여해 주고 있다. 바로, 독립투사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이라 여겨진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의 규정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法統)을 계승한 대한민국은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적용 대상자)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6.6)

42) 참조: NAVER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73114&cid=40942&categoryId=37404(2020. 6.6)

43) 참조: 연합뉴스: https://www.koreancent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66842(2020.9.9)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建國勳章)·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라 규정하고 있다.

「외국 국적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독립유공자 등에 관한 특례에는 다음의 내용이 있다.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 동포 중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친족에 해당하는 자가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을 원하는 때에는 국적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5조[44] 및 제6조[45]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신청을 받아 국가보훈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국적회복 또는 귀화를 허가할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 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표장을 받은 일부 항일유공자들도 한국국민에서 배제되어 재외동포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은 물론 항일유공자 후예들에 대한 보상에도 문제가 제기된다. 이는 독립운동에서 희생된 한인

44) 제5조(국내신청자격) 외국국적 동포로서 이 지침에 따라 국내에서 국적회복 또는 귀화 허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적법하게 입국·체류 중인 때에 한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그 신청을 할 수 있다.

45) 제6조(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의 증명) ①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하여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1. 본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2. 본인의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및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 관련국의 공적서류 또는 공증증서 등
3. 6촌 이내 혈족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그 혈족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관련국의 공적서류 또는 공증증서, 족보와 친척관계 확인서, 공인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유전자감식결과 등
4. 그 밖에 위 각호에 준하는 증명자료
②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본인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1.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2. 부 또는 모의 4촌 이내 혈족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그 혈족과 부 또는 모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족보와 친척관계 확인서, 관련국의 공적서류 또는 공증증서, 공인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 감식결과 등
3 그 밖에 위 각호에 준하는 증명자료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있어 본인,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에 표시된 성명, 생년월일이 여권 기타 외국의 신분서류 기재사항과 다른 때에는 상당한 관계가 있는 자의 친척관계 확인 등 적절한 방법으로 동일인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독립투사들에게 중국조선족 투사칭호를 부여해 주고 있는 중국의 국적인정과 어느 정도의 대조를 이루고 있다.

2. 항일투사로 인정된 한인투사들

19세기 중기 한반도의 자연재해로 많은 조선이주민들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 중국의 산해관 이북에 위치한 동북지역에 이주하였고 1910년 "한일합병조약"이 체결되고 한반도가 일본식민지로 전락된 후부터 한반도의 애국지사들은 대거 중국과 러시아의 연해주로 망명하였다. 그중 한반도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위해 한반도를 떠나 일제와 싸우다가 희생된 수많은 독립투사들은 이국땅에 묻혀있다. 중국 땅 나아가서 이국땅에서 희생된 많은 한인독립투사들은 중국에서 조선족투사칭호를 부여 받고 있다. 그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존중과 인정이라 여겨진다.

1953년 8월 17일 중공중앙에서는 동북국의 청시에 의하여 "중국 국적 조선민족과 조선교민문제에 관한 중앙의 지시"를 내렸다. 본 지시에는 무릇 중화인민공화국이 건립되기 전에 동북경내에 거주한 자로써 농촌에서 토지 혹은 가옥을 배분받았거나 성시에서 가업을 이룬 조선인민은 중국국적조선족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조선교민으로 등록된 자는 변경하지 않는다. 또한 1949년 10월 1일 이후 동북지역에 이주한 자는 모두 재중조선인으로 인정한다[46]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산해관을 지역적인 기준으로 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일을 시간적인 기준으로 하여 1949년 10월 1일 전에 산해관 이남에 이주한 조선이주민들은 북한국적을 가진 재중조선인으로, 산해관 이북에 이주하여 토지개혁에 참가한 조선이주민들은 중국국적을 가진 조선족공민으로 구분 되었다. 그러나 독립운동에서 희생된 한인투사들은 출생지와 거주지 그리고 그 희생지가 산해관 이남과 이북이 따로 없이 중국조선족 항일투사로, 중국공민으로 인정받고 있다.

중국에는 항일전쟁에서 독립운동을 위해 싸운 조선족투사들에 관한 책들이 많이 출판되었다. 그 중 항일전쟁승리 70주년 기념도서 "중국조선족 항일열사 100인"에는 산해관 이북에 위치한 흑룡강성, 길림성, 요녕성에서 희생을 치른 독립투사외에도 산해관 이남지역에서 희생된 독립투사들 그리고 국외에서 희생된 독립투사들도 있다.

첫째, 박영이다.

---

46) 참조: 長白朝鮮族自治县志编纂委员会, ≪长白朝鮮族自治县志≫, 中华书局 1993, 287页. 中共中央指示, 1953年7月18日, 外交部档案馆, 108-00018-02, 13-15页.

1887년 함경북도에서 출생한 박영은 1920년대 초 반일무장대오에 참가했다. 1920년 6월 풍무동(風無動)전투에 참가하고 1923년 러시아 원동 쏘베트위원회의 위원, 주석으로 임했으며 1926년 황포군관학교에서 학습하였다. 1927년 12월 광주(廣州)기의에서 희생되었다.[47)]

둘째, 박윤서이다.

1896년 러시아 원동에서 출생한 박윤서는 1930년 중공만주성위순찰원(巡視員)으로 연변에서 "홍5월 투쟁"을 조직하였고 약수동 소베트정권을 건립하였으며 연변 첫유격대인 개산툰 유격대의 창시 인이었다. 1930년 그는 소련에서 피살되었다.[48)]

셋째, 김산이다.

1905년 평안도에서 출생한 김산은 중국광주기의에서 홍군 지위부 엽정[49)]의 군사참모로 있었으며 1929년 지하당 북평(현재 북경) 시위 조직부장으로 있었다. 1938년 공산당의 항일근거지 연안에서 강생[50)]의 착오에 의해 살해되었다.[51)]

넷째, 석정이다.

1901년 경상남도에서 출생한 석정은 1919년 혁명에 참가하고 1936년 조선민족당 중앙집행위원으로 있었으며 1938년에는 조선의용군의 주요성원으로 있었다. 1941년에는 화북 조선인 청년연합회의 주요 영도자 중의 한사람으로 있었고 1942년 반일군의 "춘기소탕"전투에서 희생되었다.[52)]

그 외에도 1908년 평안도에서 출생하고 1944년 하북성에서 일제와의 싸움에서 희생된 주문빈(周文彬),[53)] 1911년에 평양에서 출생하고 1942년 반일군의 "5월 소탕"에서 희생된 진광화(陳光華),[54)] 1919년 황해도에서 출생하고 1945년 호남에서 일본군저격에서 희생된 김원영(金元英),[55)] 1897년 강원도에서 출생하고 1961년에 중국북경에서 병사한 김자렬(金子烈)[56)]등 많은 항일투사들이 있다.

47) 참조: 박문봉/김광영, 중국조선족 항일투사 100인, 민족출판사, 2015년, 310쪽.
48) 참조: 박문봉/김광영, 앞의논문, 318쪽.
49) 엽정(叶挺)(1896년9월10일－1946년4월8일), 중국인민해방군 창시인중의 한사람. 항일전쟁시기 신사군 군장.
50) 강생(康生,1898년-1975년)림표, 연안정풍시기 중앙 총 학습위원회 부주임. '4인방'의 주요인물이다.
51) 참조: 박문봉/김광영, 앞의논문, 581쪽.
52) 참조: 박문봉/김광영, 앞의논문, 600쪽.
53) 참조: 박문봉/김광영, 앞의논문, 619쪽.
54) 참조: 박문봉/김광영, 앞의논문, 624쪽.
55) 참조: 박문봉/김광영, 앞의논문, 651쪽.
56) 참조: 박문봉/김광영, 앞의논문, 655쪽.

위의 독립유공자들은 모두 중국에서 조선족항일투사로 인정받고 있다. 정치적인 성향도 있겠지만 산해관 이남에서 희생된 한인 독립투사들도 중국조선족 항일투사로 다시 언급하면 중국국적자로 인정해 주는 것은 독립운동에서 치른 그들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인정이라 여겨진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역사속의 다양한 인물들을 재외동포로 재조명할 필요로 인해 윤동주와 몇몇 독립투사들은 한국국민에서 배제되고 있다. 우수인재들에게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선호하고 있는 한국에서 윤동주 그리고 일부 독립투사들을 한국국민에서 배제시키고 있는 것은 독립투사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龜鑑)", "항구적인 존중", "그 희생과 공헌"에 대한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견해이다.

Ⅴ. 나가는 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法統)을 계승한 한국은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바탕으로" 민족의 독립과 한반도의 주권을 찾았다. 하지만 오늘에 이르러 재외동포재단이 동포사회영향력을 키우려는 목적으로,[57] "역사 속의 다양한 인물을 재외동포로 재조명할 필요"로 인해 윤동주와 일부 독립투사들을 한국국민에서 배제시키고 있다.

대한민국 국적상실결정을 위해 제정된 한국의 현행국적법 제14조 3 제1항에는 다음의 규정이 있다.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제외한다. 1.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 등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대한민국의 사회질서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는 제1항에 따른 결정을 받은 자는 그 결정을 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혈통주의를 기본원칙으로 되어 한국국민으로 인정되었던 윤동주와 최재형을 비롯한 몇몇 독립투사들은 일본식민지 통치에 맞서 그 사회질서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주었으나 그들은 대한민국이 성립되기 전에 고인이 된 탓으로 한국의 사회질서유지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으므로 첫 번째 규정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다음, 한국국적법은 병역기피 제한

57)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821130500371(2020.3.3)

을 위해 엄격한 단일국적을 선호하였다. 윤동주와 최재형을 비롯한 몇몇 독립투사들은 대한민국이 성립되기 전에 고인이 되었으므로 복수국적을 가졌다하더라도 병역기피대상에 속할 수 없고 나아가서 본 조항과 충돌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국적상실결정을 위해 제정된 조항에 부합되지 않는다.

외국국적취득에 따른 국적상실결정을 위해 제정된 한국의 현행국적법 제15조에는 다음의 규정이 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윤동주는 자진하여 중국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최재형을 비롯한 몇몇 독립투사들은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많은 경우 독립운동을 위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이고 여기에서 가장 주요한 문제점은 대한민국이 성립되기 전에 취득한 것으로 본 규정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재외국민과 외국국적 동포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서 애국시인과 재외동포시인은 그 위상 뿐 아니라 법적인 지위에도 차이가 크다. 현재, 윤동주는 더는 한국의 애국시인이 아니라 재외동포시인으로, 최재형을 비롯한 일부 독립투사들도 더는 한국의 독립투사가 아니라 재외동포독립투사로 인정됨과 아울러 그들은 한국국민으로서의 법적 자격을 잃었다. 한국에서 제기하고 있는 "윤동주의 재외동포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종합적인 평가"는 무엇을 의미하며 "한국인이 모두 존경하는 윤동주를 굳이 '재외동포'로 별도로 규정할 이유"에 의문이 가면서 "재단이 충분한 연구 없이 윤동주를 재외동포로 포장"했다는 비판에 논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외국국적을 가진 우수인재들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해 주고 있는 반면 저항시인 윤동주 그리고 민족의 해방과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되어 이국땅에 묻혀 있는 독립투사들의 한국국적을 취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윤동주와 일부 독립투사들을 한국국민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독립투사들의 공헌과 희생에 대해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될 뿐 아니라 한반도의 독립운동사에 또 다른 한 갈래의 3.8선이 그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에서 저항시인 윤동주와 일부 독립투사들의 이중국적 인정과 묵인은 그들이 치른 희생과 정신에 대한 존중 나아가서 한반도의 독립투쟁사와도 직접적인 영향을 갖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견해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김혁, 윤동주, 연변인민출판사 2019년.

박문봉/김광영, 중국조선족 항일투사 100인, 민족출판사, 2015년.

이광인, 시인 윤동주 인생 려정 연구, 民族出版社, 2015年.

최문식/김동훈, 윤동주 유고집, 연변대학출판사,1996년,17쪽.

尹东柱著/里咏译, 仰望天空毫无愧恨, 北京出版社, 延边人民出版社。2012年.

2. 학술지

김응교, “우애와 기억의 공간, 윤동주와 정병욱-윤동주 연구”, 한민족문화학회, 한민족문화연구 2015년(2), 7-34쪽.

박 환, “최재형과 재러 한인사회:1905년 이전을 중심으로”, 사학연구 1998(9), 한국사학회, 705-726쪽.

유성호, “민족 저항시인으로서의 윤동주, 나라사랑”, 나라사랑128집, 외솔회, 2019, 120-137쪽.

이정은, “최재형의 생애와 독립운동”,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 독립기념과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6.10. 291-319쪽.

3. 인터넷자료

연변라지오tv방송국: http://www.iybtv.com

연합뉴스: https://www.koreancenter.or.kr

연합뉴스: https://www.yna.co.kr

인민넷: http://korean.people.com.cn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

MOYIZA: https://news.moyiza.kr

NAVER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YTN: https://www.ytn.co.kr

[Abstract]

A Brief Analysis of Yoon Dongju's Nationality

-And on the Nationality of the Anti-Japanese Martyrs-

YAN HAIYU*

The poems of Yoon dongju and Yoon dongju have been widely known in South Korea since the 1940s and have been respected by South Koreans. Since the 1980s, they have been well known in China and later known as "Chinese Korean patriotic poets". At present, Yoon dongju was excluded from South Korea because of the "necessity of readjusting the figures of foreign compatriots in the history", and became a Foreign compatriot with Chinese nationality, which caused controversy.

At present, South Korea, the successor to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South Korea, granted dual citizenship to talented people, but abolished the Korean citizenship of Yoon dongju and some anti-Japanese martyrs buried in foreign countries. The issue of the nationality of Yoon dongju is not only a matter of the nationality of the individual, but also the nationality of some anti-Japanese martyrs buried in foreign countries during the struggle for national liberation and the recovery of the motherland during the colonial period. It is related to the sacrifice and personality of the deceased and has a direct connection with the history of the Korean Peninsula.

The exclusion of Yoon dongju and some of the independence fighters from South Korea is not only disrespectful to their contributions and sacrifices, but also a split in the compilation of national history on the Korean Peninsula. By contrast, China, which advocates a single nationality, has granted Chinese citizenship to Yoon dongju, who was excluded from South Korea, and to some of the anti-Japanese martyrs who participated in the anti-Japanese movement in China and paid sacrifices. The recognition of the dual nationality of Yoon dongju and the independence fighters is not only a respect for the sacrifice and spirit they have made, but also for the historical truth of the Korean Peninsula.

[Key Words] Yoon dongju, Patriotic poet, Compatriots abroad, Anti-Japanese martyrs, Dual nationality

* Associate Professor, Law School of Yanbian University